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1-10

서 울 행 정 법 원

제 6 부

판 결

사 건 2019구합52409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
담당변호사 [redacted]

피 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
변 론 종 결 2019. 8. 21.

판 결 선 고 2019. 9. 2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8. 8. 8.[1]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) 2018. 8. 16.은 처분 송달일로 보인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1-10

1. 기초사실

원고는 2015. 1. 30. [redacted]구 B건물 C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를 경매로 취득한 후, 취득가격 2,289,000,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(2015. 7. 24.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105,294,000원을 신고·납부하였다가, 2018. 7. 9. '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로 원시취득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한다'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나, 피고는 2018. 8. 8. 이를 거부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는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'원시취득'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나. 구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'원시취득'의 경우 1천분의 28로(제11조 제1항 제3호), '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'의 경우 농지는 1천분의 30,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(같은 항 제7호) 각 규정하고 있을 뿐, '원시취득'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,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.

그런데 ① '경매'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(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),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인 점(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5누736 판결), ②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1-10

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고,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(민사집행법 제91조 제3 내지 5항, 제268조) 경매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는 점, ③ 민법 제578조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성용

판사 이학승

판사 권주연